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7
------------	-----

제안년월일 : 2006년 4월 2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그 지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월정수당은 월 1,830,000원으로 정함.(안 제3조 제1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발췌 : 별첨

- 가.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 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의정비심의원원회의 구성 등)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월정수당)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월 1,830,000원으로 한다. 단,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월정수당은 충청북도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충청북도공무원의 예에 따른다.</p>	<p>제7조(준용) <u>월정수당</u>..... </p>
<p>[별표 3] 별지</p>	<p>[별표 3] 삭제</p>

[별표 3]

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대상지역

(단위 : km)

시 · 군별	대 상 지 역
충주시	동일원(71.0), 상모면(80.7), 살미면(71.7), 소태면(94.8), 엄정면(85.8), 산척면(85.8), 동량면(81.8), 금가면(83.8), 가금면(81.8), 양성면(77.8), 노은면(69.8), 신니면(63.8)
제천시	동일원(118.9), 봉양읍(109.2), 백운면(120.9), 송학면(129.0), 청풍면(129.7), 금성면(130.2), 수산면(116.0), 한수면(124.7), 덕산면(109.4)
보은군	산외면(64.3), 외속리면(63.2), 내속리면(66.1), 삼승면(66.1), 탄부면(67.2), 마로면(70.1)
옥천군	동이면(63.4), 안남면(74.2), 안내면(72.1), 청성면(75.8), 청산면(77.5), 이원면(64.6), 군서면(60.6)
영동군	영동읍(83.4), 용산면(87.2), 황간면(100.0), 추풍령면(108.0), 매곡면(104.9), 상촌면(110.7), 양강면(87.4), 용화면(113.4), 학산면(97.7), 양산면(100.9), 심천면(74.0)
괴산군	장연면(65.6), 연풍면(70.4), 불정면(62.2)
음성군	생곡면(60.5), 감곡면(71.6)
단양군	단양읍(143.5), 매포읍(155.6), 단성면(154.7), 대강면(155.4), 가곡면(150.7), 영춘면(164.4), 어상천면(164.8), 적성면(168.6)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1999.8.31, 2003.7.18, 2005.8.4>

1.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본회의 또는 의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할 때 지급하는 경비

3.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4>

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신설 2005.8.4>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 ·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의한 금액

2. 여비 :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5조의2(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심의회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

보한 날까지로 하되, 차기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당해 연도 10월 말까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자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